

제 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3. 2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3월 22일
전문위원 허 은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32
- 나. 발 의 자: 송순호 의원 외 7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3월 11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3월 15일

2. 제안이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평가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라.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설정함(안 제7조)

- 마.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바. 취업·창업 활성화, 여성 안전, 가족친화 환경 및 특화사업 등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 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 아.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구성과 기능,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 자.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나. 협조부서: 가족정책과
 - 다. 기 타: 입법예고(2022. 3. 11. ~ 3. 16.) 결과 의견 있음
 - 목적 및 정의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추가
 - 성별영향 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조항 신설
 -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제안, 자문, 심의역할 강화 등
- ※ 서울강서양천 여성의 전화 제출(2022.03.16.) -세부내역 별첨참조

5. 검토의견

- 가. 제정취지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여성친화도시: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계획수립,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¹⁾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 주요 정책과제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 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정으로 조성기준의 설정, 전담인력 배치,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 지역특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및 지정 기준을 참고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성기준 및 사업 설정

-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참여단의 구성, 기능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여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부터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2022년 1월 현재 95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별첨 참조), 서울시의 경우 강동구, 양천구 등 12개 자치구²⁾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구 또한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사회참여 지원, 여성최고 지도자과정 운영,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양성, 가족친화교육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서울 강서양천 여성의 전화 제출 의견 검토

1.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추가 의견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하나 본문내용에 여성의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의 필요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조항 신설요망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제18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에서 해당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는 넣지 않음

2)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종로구

3.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제안, 자문,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 도시와 관련한 교육 홍보 및 정보보급 사항 등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추가
- 홍보 및 정보보급 등의 내용은 본 조례안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양성·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본래 목적인 제안, 자문, 심의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됨.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22. 1월 기준)

| 지역 | 계 | 지정도시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계 | 95 | 43 | 47 | 5 |
| 서울 | 14 |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 - |
| 부산 | 6 | - | 북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 - |
| 대구 | 2 | 달성군 | 수성구 | - |
| 인천 | 5 | 중구, 남동구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 - |
| 광주 | 3 | - | 광산구 | 동구, 북구 |
| 대전 | 5 | 중구 | 동구, 유성구, 서구, 대덕구 | - |
| 울산 | - | - | - | - |
| 세종 | 1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경기 | 11 |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과주시, 하남시 |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 - |
| 강원 | 8 |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 횡성군, 영월군, 원주시 | - |
| 충북 | 6 |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 증평군, 제천시 | 청주시 |
| 충남 | 11 |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 아산시 |
| 전북 | 3 | 순창군, 고창군 | 남원시 | - |
| 전남 | 8 | 광양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화순군 | 순천시, 장흥군, 강진군 | - |
| 경북 | 6 | 경주시, 김천시 |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 - |
| 경남 | 6 | 남해군, 고성군, 진주시 | 김해시, 창원시 | 양산시 |
| 제주 | - | - | - | - |

참고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심사기준

<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심사 지표(안) >

| 항 목 | 지 표 | 주요 내용 | 배점 | |
|-----------------------|--|---|--|---|
| 사업기반 구축정도 (40) | 여성 대표성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 제도적 여건 (20) | ■ 위원회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 비율 | 5 | |
| | | ■ 5급(상당)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실·국장급 이상 여성비율 10% 이상, 여성 부시장의 경우 가점 ** (군단위) 6급(상당)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5 | |
| | |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비율 * 의무교육 사항인 폭력예방교육 제외한 성 평등 (성인지) 교육 포함 가능 | 5 | |
| | | ■ 202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 실적 | 5 | |
| |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15) | ■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무부서 및 전담 인력 * 향후 전담인력 배치계획 | 5 | |
| | |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 타부서 중요사업 컨설팅, 결재라인 공유 등 | 5 | |
| | |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제도화 노력 및 기관장 활동 실적 등 | 5 | |
| | 거버넌스 추진기반 (5) | ■ 지역 여성 조직 참여를 통해 조례 제·개정, 민관협력 사업 등에서 여성 조직 참여 실적 및 참여활성화 계획 * (군단위)지역 여성 육성 사업 추진 실적 및 참여활성화 계획 ■ 여성친화서포터즈(시민참여단) 등 민관협력 활동 실적 | 5 | |
| |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60) |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10) | ■ 추진목표의 명확성 *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목표 필수 포함 | 5 |
| | | | ■ 사업 목표와 관련 사업 추진계획의 부합성 | 5 |
| 사업 계획의 충실성 (40) | | ■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 및 실효성 | 20 | |
| | | ■ 해당지자체 자체 신규 사업 발굴 * 군 단위 도시의 경우, 농촌 성평등 특화사업 필수 포함 | 5 | |
| | | ■ 연간 사업계획 및 지정기간(5년) 동안의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15 | |
| 예산계획의 적절성 (10) | ■ 재원확보 및 방안의 현실성 * 교육 및 민관협력 사업 추진 예산 반영 | 10 | | |
| 계 | | | 100 | |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서 여친도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1조(목적)에서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를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으로 수정.

수정 제안 이유는 목적에서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아 여성친화도시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제2조(정의)에서도 여성친화도시의 의미에 걸맞게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서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3. 제7조 이후에 정책 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활성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참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 제15조 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제안, 자문, 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 도시와 관련한 교육 홍보 및 지식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5.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례의 중요성에 비해 지역의 여성들과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의 과정이 촉박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큼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인만큼 지역 여성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촉구드립니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또한 여성이 지역시민으로서 주체가 되어 여성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 3.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